

[서식 예] 진료기록 감정신청서

진료기록 감정 신청

사 건 00가합000호 손해배상(의)

원 고 000

피고 00병원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.

- 아 래 -

- 피감정 진료기록의 표시 별첨과 같음
- 감정 촉탁 희망지
 대한의사협회 신경외과학회
- 3. 감정 사항 : 별지기재와 같음
- * 첨부 서류 : 1. 진료기록 사본 1부.

2007. . .

원고 000

00 지방법원 귀중



(별지)

감 정 사 항

- 1. 2007. 0. 00.자 진료기록과 관련하여 의무기록(의사처방, 경과기록, 간호기록 등)에 대한 피고의 번역이 정확한지 여부 및 부정확하다면 피고의 번역문과 올바른 번역문과의 구체적인 차이 는
- 2. 2007. 0. 00.자 진료기록에 기재된 진료과정과 관련하여
 - 가. 2007. 0. 00.자 내원 당시의 임상의학수준(의학문헌)에 기초하여 내원 당시의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, 예후 및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. 그 발생확률(%)
 - 나. 2007. 0. 00.자 진료기록을 기초로 피고병원 의사들이 환자에 대하여 시행한 외과적, 내과적 치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행위의 경과(특히 위 진료행위 중 이사건의 의학적 핵심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 요망)
 - 다. 위 진료과정(진단, 검사, 치료, 경과관찰 등)에서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주의 하여야 할 점(특히 위 진료행위 중 이 사건의 의학적인 핵심이 되는 부 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 요망)
 - 라. 위 가, 나, 다항에 비추어 볼 때, 결과적으로 피고병원 의사들의 진료 가 적절하였는지 여부, 부적절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적을 할 수 있는지
 - 마. 긴급성의 유무(치료가 시간적으로 긴급을 요하였는지, 또는 치료과정이 극히 위험하기는 하나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치료를 시작한 것인지 여 부) 및 그 정도
- 3. 본건 진료행위 중 발생한 나쁜 결과 및 현재의 나쁜 결과와 관련하여
- 가. 위 각 나쁜 결과에 대한 의학적 진단명, 일반적인 발생원인, 각 원인별 발생가능성 및 정도(%)



- 나. ①위 원인 중 본건 진료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것, 그 이유 위 원인 중 본건 진료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것, 그 이유
 - ②본건 진료행위로 인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정도(%)
- 다. 2007. 0. 00자 진료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
 - ① 진료 당시 위 각 나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, 예견 가능하였다면 이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,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
 - ②위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위 각 나쁜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 및 막을 수 있는 확률(%)



| 제출법원 | 수소법원 | 제출부수 | 신청서 | 1부 |
|--------------|---|------|-----|----|
| 신청기간 |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289 조). | | | |
| 감 정 의 의 의 |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,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. | | | |
| 감 정 의 대 상 | • 법규 : 외국법규, 관습 • 사실판단 : 교통사고원인, 노동능력의 상실정도, 필적•인영의 동일성, 토지•가옥의 임대료, 공사비, 혈액형, 정신장애의 유무및 정도 등 | | | |
| 기 타 | · 감정인은 수소법원,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. (민사소송법 제335조) ·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. 다만,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함(민사소송법 제336조). · 재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초의 감정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감정의견이 불충분하다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 또는 여러사람의 감정의견이 달라 그 채택이 불능인 때 등이다. 당사자로부터 재감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채부여부를 결정하여야하고, 채택이 되면 종전과 다른 감정인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새로운 감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. | | | |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